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규정(안 제30조의4 및 별표 1 신설)

나.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시험방법 및 과목 규정(안 제30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위탁대상 기관 추가(안 제30조의8제1항 후단 및 제3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4(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시험”을 “등급별 자격시험”으로, “다음 각 호”를 “별표 1의2”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면접시험으로 실시하고, 수상구조사 1급·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등급별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수상구조사 1급

가.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실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

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수상구조사 2급

가.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실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7항”을 “법 제30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전문기관에 내야 한다.

제30조의8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3. 법 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제30조의9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방법 및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28년 12월 20일까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강사 자격 취득 후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수상구조사 2급: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제4조(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수상구조사 1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제30조의4 관련)

등급	자격기준	업무수행 범위
수상구조사 지도사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수상구조사 교육·훈련·평가 2. 수상안전 매뉴얼 연구·개발 3. 수상구조사 1급·2급의 업무
수상구조사 1급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수상구조 활동의 총괄·조정 2. 수상구조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점검

수상구조사 등급별 시험 과목 및 배점(제30조의5제2항 관련)

1. 수상구조사 지도사

구분	과목 및 배점	
면접시험 (100점)	가. 수난사고의 이해(10점) 나. 관련 법령(10점) 다. 응급처치(25점) 라. 구조기술(25점)	마. 수상구조 지도 능력(15점) 바.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15점)

2. 수상구조사 1급

구분	과목 및 배점	
필기시험 (100점)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나. 수난사고의 이해(15점) 다. 관련 법령(10점) 라. 응급처치(20점)	마. 구조기술(25점) 바. 지도자의 자질(10점) 사. 생존수영(15점)
실기시험 (100점)	가. 영법(15점) 나. 수영구조(15점) 다. 장비구조(15점) 라. 기본구조(20점)	마. 종합구조(20점) 바. 응급처치(10점) 사. 구조장비 사용법(5점)

3. 수상구조사 2급

구분	과목 및 배점	
필기시험 (100점)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나. 수난사고의 이해(15점) 다. 관련 법령(10점) 라. 응급처치(20점)	마. 구조기술(25점) 바. 지도자의 자질(10점) 사. 생존수영(15점)
실기시험 (100점)	가. 영법(15점) 나. 수영구조(15점) 다. 장비구조(15점) 라. 기본구조(20점)	마. 종합구조(20점) 바. 응급처치(15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u> <u>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u> <u>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u> <u>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u> <u>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u> <u>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u> <u>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u> <u>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u> <u>등)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u> <u>방법으로 실시한다.</u> <u>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u> <u>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영법(泳法): 15점</u> <u>2. 수영구조: 15점</u> <u>3. 장비구조: 15점</u> <u>3의2. 기본구조: 20점</u> <u>4. 종합구조: 20점</u> <u>5. 응급처치: 10점</u> <u>6. 구조장비 사용법: 5점</u> <u>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u> <u>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u> <u>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u>	<u>제30조의4(자격기준 및 업무수행</u> <u>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u> <u>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u> <u>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u> <u>과 같다.</u> <u>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u> <u>등) ①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면</u> <u>접시험으로 실시하되, 수상구조</u> <u>사 1급·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u> <u>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u> <u>② 등급별 자격시험-----</u> <u>----- 별표 1의2-----.</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③ 등급별 자격시험의 합격 기</u> <u>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수상구조사 지도사</u>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라 자격시
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면접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
람

2. 수상구조사 1급

가.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
의 80퍼센트 이상을 취득
한 사람

나. 실기시험 :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수상구조사 2급

가.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
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
한 사람

나. 실기시험 :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 법 제
30조의2제8항-----

-----.
이 경우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

1. · 2. (생략) <u><신설></u>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 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 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 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생략)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 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 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 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서 그 내용은 <u>별표 1</u>과 같다. ③ (생략)	<u>료는 해당 전문기관에 내야 한 다.</u>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 구조협회</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 ----- <u>별표 1의3</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연 락 처	(032) 835 - 2546